

# 문화재 관리인의 활성화방안 (文化財管理人的 活性化方案)

姜 大 旭  
<京畿道廳 學藝研究官>

## 目 次

- |                 |               |
|-----------------|---------------|
| 1. 序 論          | 3) 管理體制       |
| 2. 文化財管理의 意義    | 5. 問題點 및 改善方案 |
| 3. 文化財管理의 發展方向  | 1) 問 題 點      |
| 4. 京畿道文化財의 管理實態 | 2) 改善方案       |
| 1) 文化財 現況       | 6. 結 論        |
| 2) 文化財 管理의 類型   |               |

## 1. 서론(序論)

문화재(文化財)란 인간(人間)의 문화활동(文化活動)의 소산(所産)으로써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를 지니고 있는 형태(形態)·무형(無形)의 유산(遺産)을 총칭한 것으로 문화재(文化財) 안에는 우리 조상(祖上)들의 “얼”이 담겨 있고 우리의 민족혼(民族魂)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의 문화재(文化財)를 대하고 볼 때마다 조상(祖上)들의 체취를 느낄 수가 있으며 역사(歷史)의 배경을 살필 수가 있다고 하겠으니 문화재(文化財)야 말로 우리 민족(民族)의 정신문화(精神文化)와 국민정신(國民精神)을 계발(啓發)하는데 매우 중요(重要)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本稿)는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의의(意義)와 발전방향(發展方向)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경기도(京畿道)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실태(實態)와 문제점(問題點)을 도출하여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提示)함으로써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효율적(效率的)인 운용(運用)을 기(期)하고자 하는데 있다.

## 2.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의의(意義)

문화재(文化財)는 일반재산(一般財産)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이는 실용적(實用的) 가치(價値)보다도 역사적(歷史的), 예술적(藝術的) 또는 관상적(觀賞的) 가치(價値)에 치중(置重)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特徵)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산(一般財産)이 시간(時間)의 흐름과 생활(生活)의 변화(變化)에 따라 그 현상(現狀)이 변경(變更)될 수 있고 주변여건(周變與件)에 따라 그 가치(價値)가 상승(上昇)되는 것이라면, 문화재(文化財)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현상(現狀)이 변경(變更)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아무리 주변여건(周變與件)이 변경(變更)되더라도 결코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가 상승(上昇)되지 않는 것이 문화재(文化財)의 성격(性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變更)은 곧 문화재(文化財)의 가치(價値)를 상실하는 것이니 문화재(文化財)의 관리(管理)가 현상불변(現狀不變)의 원칙하(原則下)에 보존(保存)되고 관리(管理)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요,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의의(意義)가 바로 이점에 있음을 간과(看過)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 3.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발전방향(發展方向)

문화재(文化財)는 현상불변(現狀不變)의 원칙하(原則下)에 관리(管理)되어야 하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어떠한 사정(事情)으로 인(因)하여 그대로 계속 보존(保存)이 불가능(不可能)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복원(復元) 또는 보수(補修)의 방법(方法)으로 재현(再現)함으로써 본래(本來)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京畿道)의 수부(首府)이자 효원(孝園)의 도시(都市)로 이름 높은 수원(水原)의 상징적인 문화재(文化財), 수원성곽(水原城廓)도 민족수난(民族受難)의 와중에서 본래(本來)의 모습을 상실(喪失)하여 그 유지(遺址)만으로 명맥(命脈)을 이어 왔었으나 1975년 복원공사(復元工事)가 시작되어 1979년까지 5個年에 걸쳐 16억(億)여원의 막대한 사업비(事業費)를 투자(投資)하여 완공(完工)함으로써 조상(祖上)의 얼과 슬기를 되찾고 새로운 민족문화(民族文化) 발전(發展)과 국민정신(國民精神) 함양의 도장(道場)으로 활용(活用)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주지(周知)하는 바이거니와 옛모습 그대로의 원형(原形) 복원(復元)을 위(爲)하여 전돌 하나 하나의 치수와 여장(女牆)의 규모(規模), 성첩(城堞)에 이르기까지 「華城城役儀軌(화성성역의궤)」에 의(依)하여 정확(正確)하게 복원(復元)된 사실(事實)은 문화재(文化財)의 본질(本質)이 바로 원형보존(原形保存)에 있음을 명확(明確)하게 제시(提示)한 실례(實例)라고 하겠다.

문화재(文化財) 주변(周邊)의 환경정비(環境整備)와 미화작업(美化作業)은 어디까지나 문화재(文化財)의 생명(生命)인 원형(原形)을 오래도록 보존(保存)하기 위한 관리방법(管理方法)일 뿐이지 결코 본질(本質)은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재관리인(文化財管理人)의 사명도 문화재(文化財)란 한번 훼손되면 그 가치(價値)를 영원(永遠)히 상실한다는 관리인자신(管理人自身)의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 인식과 문화재(文化財)는 곧 관리인(管理人)의 신분(身分)으로 생각하는 개념(概念)의 정립(定立)이 선행(先行)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문화재관리인(文化財管理人)의 선임(選任)은 다른 관리인(管理人)의 선임(選任)처럼 관행적(慣行的)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4. 경기도문화재(京畿道文化財)의 관리실태(管理實態)

#### 1) 문화재 현황(文化財 現況)

- 지정별(指定別)

<表 1>

계 (計)	국가지정(國家指定)						지방지정(地方指定)				
	소계 (小計)	국보 (國寶)	보물 (寶物)	사적 (史蹟)	천기 (天記)	무형 (無形)	소계 (小計)	유형 (有形)	기념물 (記念物)	민속자료 (民俗資料)	문화재자료 (文化財資料)
438點	154	18	66	43	15	4	210	112	91	7	74

○ 소유별(所有別)

<表 2>

계(計)	박물관(博物館)	국공유(國公有)	개인(個人)	사찰(寺刹)	향교(鄉校)
438	35	267	55	63	18

## 2) 문화재 관리(文化財管理)의 유형(類型)

○ 소유자(所有者)에 의(依)한 관리(管理)

문화재(文化財)의 관리(管理)는 현상불변(現狀不變)의 원칙하(原則下)에서 그 현상(現狀)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보호간수(保護看守)와 필요(必要)한 조치등(措置等)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첫째가, 소유자(所有者)에 의(依)한 관리(管理) 의무(義務)를 들 수 있겠는데, 누구의 소유(所有)이든 일단 문화재(文化財)로 지정되면 그 소유자(所有者)는 지정(指定)된 문화재(文化財)에 대하여 선량(善良)한 보호관리(保護管理)의 의무(義務)가 부여(附與)되며 제규정(諸規定)을 준수함은 물론 관계기관(關係機關)의 명령(命令)과 지시(指示)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에 대(對)하여 별다른 행정처분(行政處分)이 없는 한 그 관리의 무(管理義務)와 책임(責任)이 소유자(所有者)에게 있음은 이미 언급하였거니와 다만 소유자(所有者)의 특별(特別)한 사정(事情)에 따라 소유자(所有者)가 관리인(管理人)을 선임(選任)하였을 때에는 선임(選任)된 자가 그 관리책임(管理責任)을 지는 것이며, 소유자(所有者)의 사정(事情)으로 또는 소유자(所有者)가 관리(管理)함으로써 문화재(文化財)의 보존상(保存上) 부적당(不適當)하다고 인정(認定)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도지사(道知事))은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나 기타(其他) 법인(法人)을 지정(指定)하여 문화재(文化財)를 관리(管理)케 하는데 현재(現在) 시장(市長)·군수(郡守)가 지방(地方) 및 국가문화재(國家文化財)의 관리자(管理者)로 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例)이다.

○ 국가(國家)에 의(依)한 관리(管理)

이것은 일방적(一方的)인 국가관리(國家管理)를 뜻하는 것으로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나 관리단체(管理團體)가 문화재(文化財)의 관리보호상(管理保護上)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에 대하여 명령(命令)을 받고 그 명령(命令)에 응(應)하지 않거나 그 명령(命令)의 내용(內容)이 소유자(所有者)나 관리자(管理者)가 이행(履行)할 수 없다고 인정(認定)될 때 국가(國家) 스스로가 일방적(一方的)으로 행(行)하는 관리행위(管理行爲)를 말한다.

현재(現在) 능원(陵園)이나 고궁(古宮)의 관리(管理)는 국가(國家)에 의(依)한 직접적(直接的)인 관리(管理)의 형태(形態)이다.

### 3) 관리체제(管理體制)

현재(現在) 경기도(京畿道)에서는 기보수(既補修)된 문화재(文化財)의 사후관리(事後管理)와 보수(補修)치 않은 문화재(文化財)의 원형보존(原形保存)에 철저(徹底)를 기(期)하고 관리체제(管理體制)를 조직(組織)화하기 위(爲)하여 각급(各級) 기관별(機關別)로 문화재점검관(文化財點檢官)을 임명(任命), 지도관리(指導管理)에 임하고 있으며, 특(特)히 문화재(文化財)의 직접적(直接的)인 관리책임부여(管理責任附與)와 효율적(效率的)인 보호관리(保護管理)를 목적(目的)으로 시(市)·군별(郡別)로 문화재(文化財) 현지(現地) 관리책임자(管理責任者)(관리인(管理人))를 임명활용(任命活用)하고 있다.

#### ○ 현지 관리책임자 임명현황(現地 管理責任者 任命現況)

구분(區分)	임명상황(任命狀況)	활동사항(活動事項)
○ 시·군단위 점검관 (市·郡單位 點檢官)	도과장급이상 29명 (都課長級以上)	○ 연4회 이상 담당시·군지도점검 (年4回 以上 擔當市·郡指導點檢) · 읍·면·동단위점검관활동상황 (邑·面·洞單位 點檢官活動狀況) · 마을단위 점검관활동상황(點檢官活動狀況) · 현지관리책임자 근무상황 (現地管理責任者勤務狀況) · 관내 문화재보존 관리실태 (官內 文化財保存 管理實態)
○ 읍·면·동단위 점검관 (邑·面·洞單位 點檢官)	시·군계장급이상 116명 (市·郡係長級以上)	○ 월1회 이상 담당 읍·면·동 지도점검 (月1回 以上 擔當 邑·面·洞 指導點檢) · 마을단위 점검관 활동상황(點檢官活動狀況) · 현지관리책임자 근무상황 (現地管理責任者勤務狀況) 관내 문화재 보호관리 실태 (官內 文化財保存 管理實態)
○ 리·동단위 점검관 (里·洞單位 點檢官)	읍·면동계장급이상 178명 (邑·面洞係長級以上)	○ 주1회 이상 담당리·동지도 점검 (週1回 以上 擔當里·洞指導 點檢) · 현지 관리책임자 근무상황 (現地管理責任者勤務狀況) · 관내 문화재보호 관리 실태 (官內 文化財保存 管理實態)
○ 현지관리책임자(관리인) (現地管理責任者(管理人))	임명(任命) : 218명 소유자(所有者) : 80명 리동장(里洞長) : 70명 마을유지 : 30명 공무원(公務員)(감시원) : 38명	○ 매일 문화재순시점검(每日 文化財巡視點檢) · 직접적(直接的)인 문화재관리(文化財관리(管理))(순찰) · 주변정비(周邊整備) 및 청소 ※ 문제점(問題點) 발견시(發見時) 계통(系統)을 통(通)하여 즉시 보고조치(報告措置)

## 5. 문제점(問題點)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 1) 문제점(問題點)

<표(表)1>과 같이 경기도(京畿道)의 문화재(文化財)는 1986년 현재(現在) 국가문화재(國家文化財) 154점(點),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 284점(點), 총(總) 438점(點)으로 소유별(所有別) 내용(內容)은 <표(表)2>와 같이 박물관(博物館) 12점(點), 국(國)·공유(公有) 192점(點), 개인(個人) 55점(點), 사찰(寺刹) 63점(點), 향교(鄉校) 18점(點)으로 이 중에서 박물관소장분(博物館所藏分)과 개인(個人) 또는 사찰소유(寺刹所有) 문화재(文化財)는 보존관리(保存管理)에 있어 별(別)로 문제점(問題點)이 야기되고 있지 않으나, 전체(全體) 문화재(文化財)의 62%를

점(占)하고 있는 국(國)·공유(公有) 문화재(文化財)와 향교소유(鄕校所有) 문화재(文化財)의 관리(管理)는 리(里)·동장(洞長) 또는 마을 유지로 임명된 현지(現地) 관리인(管理人)에 의(依)하여 보호(保護)되고 있는 관계(關係)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는 현지(現地) 관리인(管理人) 운용상(運用上)의 모순점과 현실적(現實的)으로 실현가능성(實現可能性)이 없는 규정(規程)에만 의존(依存)한 시책상(施策上)의 잘못으로 판단(判斷)되기 때문에, 다소 유형(類型)은 달리하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指導者) 관리운용(管理運用) 방식(方式)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모순점의 요인(要因)을 분석(分析)하여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자 한다.

<문화재관리인(文化財管理人)과 새마을지도자(指導者)의 학력별(學歷別),  
연령별(年齡別) 비교(比較)>

○ 학력별(學歷別)

<表3>

구분(區分)	계(計)	대졸(大卒)	고졸(高卒)	중졸(中卒)	초졸(初卒)	무학(無學)	비고(備考)
문화재관리인 (文化財管理人)	218名	15	45	65	93		
새마을 지도자(指導者)	13,151	335	3,998	4,746	4,048	24	

○ 연령별(年齡別)

<表4>

구분(區分)	計	20~30歲	31~40	41~50	51~60	60以上
문화재관리인 (文化財管理人)	218名	13	59	122	15	9
새마을 지도자(指導者)	13,151名	1,362	5,448	4,959	1,260	122

○ 예우(禮遇)

내용(內容)	문화재관리인 (文化財管理人)	새마을지도자(指導者)	비고(備考)
1. 장학금 지급	없음	580名(132,617,000원)	시군의사회협약
2. 의료 시혜	"	의료보험카드 발급(가족포함)	
3. 신문 보급	"	새마을 신문(주간지)	
4. 수첩 지급	관리인수첩(문공부)	새마을 수첩(경기도제작)	
5. 산업시찰	없음	년 1회 시군별로 실시	
6. 격려사 발송	"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7. 훈포장 실시	년 1회도당 1명시상	년 1회 지도자 대회시 수여	
8. 지도자증 발급	없음	교통요금 할인 혜택	
9. 영농자금우선지원	"	지도자 우선권 부여	
10. 지도자교육 실시	"	5년에 1회(여비 및 교육비지급)	
11. 지도자협의회 보조금 지급	"	도 8,000,000원, 읍면 300,000원 시군 3,000,000원	
12. 사망시 예우	"	공상 : 내무부장관, 도지사조전, 시장군수 위로금전달 일반 : 새마을 담당관(내무부) 조전, 시장군수 위로금전달	
13. 임명장	시장·군수		

○ 요인분석(要因分析)

<표(表)3·4>에서 비교(比較)된 바와 같이 문화재관리인(文化財管理人)과 새마을 지도자(指導者)와의 학력별(學歷別), 연령별(年齡別) 통계(統計)는 거의 비슷한 현상(現狀)을 나타내고 있어 인적(人的) 구성면에서 볼 때 학력(學歷)과 연령(年齡)으로 인(因)한 문제점(問題點)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표(表)5>에서 비교(比較) 검토(檢討)된 바와 같이 문화재관리인(文化財管理人)이 국가(國家)로부터 받은 예우(禮遇)는 고작 임명장을 수여하고 관리인(管理人)의 행동지침(行動指針)인 수첩(手帖)을 지급(支給)받고 있는데 비하여 새마을지도자는 재정상(財政上), 명예상 또는 현실(現實) 생활(生活)과 직결된 모든 면에서 특혜(特惠)를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문제점(問題點)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첫째, 관리인(管理人)을 선임(選任)하는데 있어 문화재(文化財)의 인식(認識)과 개념정립(概念定立)에 투철(透徹)한 사람을 임명(任命)하여야 함에도 현재(現在) 여건상 자진 희망자(希望者)가 없고 규정상(規定上) 형식적으로 임명(任命)하는 행정행위(行政行爲)의 관행(慣行)으로 부적격자가 관리인(管理人)으로 선임(選任)되고 있으며,

둘째는 관리인(管理人)으로 선임(選任) 임명(任命)된 관리자(管理者)에 대한 관리(管理)도 관계당국(關係當局)의 무관심으로 관리인(管理人)의 참여의식이 극도로 결여되고 있으며,

셋째는 선임(選任)된 관리인(管理人)이 관계규정에 의하여 확일적으로 문화재(文化財) 소재지역(所在地域) 관할 리(里)·동장(洞長) 또는 유지급(有志級) 인사(人士)로서 무보수(無報酬) 관리(管理)에 임하는 실정(實情)으로 책임감(責任感)이 결여되고 있고 행정당국(行政當局)의 관심권 밖에서, 근무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음으로 사실상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상태(狀態)로 방치되어 있는 이른바 서류상(書類上) 관리인(管理人)이 되고 있는 점이다.

## 2) 개선방안(改善方案)

문화재(文化財)를 효율적(效率的)으로 관리(管理)하기 위하여는

○ 첫째 : 관리인(管理人)을 선임(選任)하는데 있어 지역사회(地域社會)에서 명예를 가진 유지급(有志級)에 국한하지 말고 문화재(文化財) 인식(認識)이 투철하고 향토(鄉土)사랑의 정신(精神)이 남다른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문화재애호(文化財愛護)에 헌신(獻身)할 수 있는 인사(人士)로 직업인(職業人)보다는 수시로 문화재(文化財)와 접(接)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자(者)로 선임(選任)되어야 하겠다.

「예(例)」 문화재(文化財) 주변마을의 노인회(老人會), 청년회(青年會), 부인회(婦人會).

※ 국가(國家)에 봉사(奉仕)하는 자부심과 긍지유도

○ 둘째 : 행정당국(行政當局)의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관리인(管理人) 운용방식(運用方式)을 탈피(脫皮)하여 年 2회의 정기교육(定期教育) 실시(實施)로 참여의식(參與意識)과 문화재애호(文化財愛護) 정신(精神)을 고취(鼓吹)하고 시(市)·군단위(郡單位) 「군·민(郡·民)의 날」 행사(行事) 또는 문화(文化)의 달 행사(行事)에 관리인(管理人)을 참여케하여 관리인(管理人)으로서의 긍지(矜持)와 사명감(使命感)을 갖게 한다.

○ 셋째 : 지방재정(地方財政)·형편상 유급제관리인(有給制管理人) 운용(運用)이 불가능(不可能)할 때는 최소한 年 1회 정도의 격려금(1인당(人當) 5만(萬)원)을 지급하는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함으로써 관리책임(管理責任)의 의식(意識)은 물론(勿論) 소속감을 고취(鼓吹)하고 향토문화(鄉土文化) 수호인(守護人)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유도한다.

○ 넷째 : 현행(現行)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서 실시(實施)하고 있는 문화재관리인(文化

財管理人) 시상제도(施賞制度)는 年 1회에 도별(道別)로 1명(名)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개선(改善)하여 年 1회 시·군당(市·郡當) 1명(名) 이상(以上) 수상되도록 시상제도(施賞制度)의 확대시행(擴大施行)과 이에 따른 수상자 미담 사례를 신문(新聞) 또는 TV 등에 보도함으로써 문화재(文化財) 애호(愛護)의 범국민적(汎國民的) 파급(波及) 효과(效果)를 거양(擧揚)토록 한다.

○ 다섯째 : 현재(現在) 경기도(京畿道)에서 정기발행(定期發行)하는 간행물(刊行物)(새경기책자(慶畿冊子) 배부처(配付處)에 문화재(文化財) 관리인(管理人)을 포함(包含)시켜 도정(道政) 및 국정방향(國政方向)을 인식(認識)시키는 한편 문화유산(文化遺産) 애호(愛護)에 바라는 관리인(管理人)의 「고정투고란」을 설정(設定)하여 국민적(國民的) 관심을 제고시킨다.

○ 여섯째 : 관리인(管理人) 신분증명서(身分證明書)를 발급(發給)하여 문화재(文化財) 관람지역이나 관광지(觀光地)의 무료입장(無料入場)을 제도화하고 年 1회의 산업시찰(産業視察)로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갖게 하여 관리(管理) 의욕(意慾)을 고취(鼓吹)시키는 제도적 개선책(改善策)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6. 결론(結論)

효율적(效率的)인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原因)은 크게 나누어 세가지로 요약(要約)될 수 있으니 첫째가 일반적(一般的)인 현상으로 문화재(文化財) 인식(認識)부족에서 오는 국민(國民)들의 방관적 자세이며, 둘째로는 관리인(管理人)을 운용(運用)하는 행정당국(行政當局)의 시책(施策)이 외형적(外形的) 효과행정(效果行政)에만 비중을 두는 불균형(不均衡)과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의 인식결핍으로 개선방안(改善方案)의 강구등이 시기적절하게 뒤따르지 못했다는 점(點)이며, 셋째는 현행(現行) 규정(規程)이나 관리지침(管理指針)이 관리인(管理人)을 탄력성있게 운용(運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적극적인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가 안되고 있을 뿐더러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이외(以外)의 향토문화재(鄉土文化財)가 계속 도난, 멸실되고 있음에도 보호(保護)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實情)에 있음은 이들 향토문화재(鄉土文化財)가 계속 국가(國家) 또는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로 지정(指定)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문화재관리인(文化財管理人)은 지정문화재(文化財)만을 관리(管理)한다는 개념(概念)을 고쳐 곳곳에 산재(散在)한 향토문화재(鄉土文化財)의 보호(保護)도 포함시켜야 될 시점(始點)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선진국(先進國)과 후진국(後進國)의 차이는 경제적으로 잘살고 못하는 것으로 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그나라 사람들이 소유가치(所有價値)를 추구하느냐로 가름된다는 말과 같이 선진국(先進國)은 경제적인 양(量)보다는 문화적(文化的)인 질(質)에 그 비중을 두고 있음에 주목할 일이다.

즉 경제적인 양(量)과 문화적(文化的)인 질(質)이 평균(平均)을 이룰 때 문화국민(文化國民)으로서의 수준과 긍지(矜持)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할 때 5천년(千年) 민족사(民族史)의 총화적(總和的) 결정체인 문화재(文化財)야말로 우리의 문화적(文化的) 질(質)을 웅변으로 나타내는 대표적(代表的)인 유산(遺産)이라고 할 것이다.

문화재관리인(文化財管理人) 그것은 결코 화려한 직업도 아니요, 경제적인 만족을 주는 직책도 아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야말로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자리임을 관리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각할 때 물지각한 자의 일확천금의 대상으로 도난, 파괴, 멸실, 훼손 위기에 있는 비지정(非指定) 향토문화재(鄉土文化財)는 본래의

위치에서 영원(永遠)히 그 모습을 보존(保存)할 것이다.



坡州龍尾里石佛立像(寶物93號)

과주용미리석불입상(坡州龍尾里石佛立像)(보물(寶物)93號)



普光寺大雄殿(京畿道有形文化財83號)

보광사대웅전(寶光寺大雄殿)(경기도유형문화재(京畿道有形文化財)83號)





고양향교(高陽鄉校)(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69號)

민족수난(民族受難)의 장(章)마다 필연적으로 따라야 했던 국보급(國寶級) 문화재(文化財)의 반출, 멸실, 도굴, 파괴, 훼손 등 문화재(文化財) 수호(守護) 애환의 가슴아픈 역사(歷史)는 바로 문화재(文化財) 보호관리(保護管理)의 산 교훈(教訓)이 되어야 하고 생생한 지침(指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상(思想)과 예술(藝術)의 영원(永遠)한 고향(故鄉)이 문화재(文化財)로 인식될 때 문화재(文化財) 보호(保護)는 자연 국민적(國民的) 차원(次元)으로 승화되어 나갈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를 관리인(管理人)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문화재(文化財)를 나의 분신(分身)처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겠으며, 따라서 문화재관리인(文化財管理人)의 지속적인 교육(教育)과 처우(處遇) 향상(向上)에 주력(注力)하는 것은 물론(勿論) 전국민(全國民)이 곧 관리인(管理人)이라는 문화재(文化財) 인식의 새로운 지표(指標)를 설정(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재(文化財) 보호(保護)의 첩경이라고 확신(確信)한다.